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721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시설 이용료 추가 경감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심리적 양육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함
-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부 수정 및 신설 : 안 별표 4
 - (일부수정) 감면율 20% :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→ 두 자녀를 둔 가족
 - (신설) 감면율 100% :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
-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면제 조문 신설 : 안 제8조제1항

○ 일부 조문 현행화 정비

- 안 제2조제8호, 제13조제2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, 제23조, 제27조제1항, 제29조제2항, 제33조제3항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의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,

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고, 안 제16조의 대관료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의 전개방식을 ‘항과 호’에서 ‘호와 목’로 바로 잡았으며, 안 별표 2의 ‘이용료의 감면 기준’에서 “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”에 대하여 모든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00%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출산에 따른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체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